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 실시 등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87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정신건강 증진 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외부 전문기관 등 위탁	2
2.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 실시	11
※ 참고자료	
-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9. 8.
3. 회 부 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Ⅲ. 검토의견

1. 정신건강 증진 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외부 전문기관 등 위탁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의 보건교육과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생략) <u><신설></u>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u><신설></u>	②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 증진 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_____ _____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	제3항에
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운영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제4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	증진 교육이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탁할 수 있다.	.

나. 검토의견

- 202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관심군 학생은 전체의 4.4%, 자살위험군 학생은 1.1%로 나타남¹⁾. 이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이 적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심층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요약 >

연도	검사 실시 학생 수	관심군		자살위험군(관심군에 포함)	
		학생 수(명)	비율(%)	학생 수(명)	비율(%)
2022	1,743,897	80,676	4.6	19,292	1.1
2023	1,731,596	76,663	4.4	20,237	1.2
2024	1,658,715	72,300	4.4	17,667	1.1

* ‘관심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상담 결과 학교 밖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으로 일반관리군과 우선관리군(자살위험 포함)으로 구분

* ‘자살위험군: ‘자살 생각’이 중등도 이상의 학생으로 즉각적 전문기관 의뢰 및 학부모 면담 등 필요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개정안에서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최근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정신건강을 관리·증진하기 위한 것임. 또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기존의 보건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1) 학교급별 현황 등 상세한 수치는 ‘참고자료3: 학교급별 관심군 현황’ 참조.

한 것은 두 교육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고, 학교 현장의 의무교육 시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나아가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적 역량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 이미 정신건강 증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보건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학교보건법」 제9조는 보건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면서 이미 ‘정신건강 증진’을 명시하고 있고²⁾, 이에 따라 연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³⁾,

2)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서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연 6차시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 증진 교육과 유사 교육 운영 현황 >

주제	기준 시수	편성·운영 방법
보건교육	17	• 한 개 학년 이상 최소 17차시 이상 편성 • 교육부지침(연도별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을 계획·실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사회정서교육)	6	•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교육과 연계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자료: 교육부

□ 둘째, 법률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는바⁴⁾, 이는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보건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⁵⁾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전부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도 개별 법률에서

4)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을 직접 정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결정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동법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정신건강 증진의 내용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의2제1항에 정신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시간 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 증진 교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위탁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도교육청6): 신중검토 - 정신건강증진교육은 현행 「학교보건법」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에 따라 자살, 생명 존중교육을 실시중에 있는 바, 유사한 교육을 중복 규정함에 따른 학교 현장 혼선 우려가 있음
○ 보건교사회: 신중검토 - 현재 보건교육의 한 분야로 정신건강 증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정신건강 증진을 분리할 경우 학교 현장 혼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정신건강은 상담교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법개정 시 보건교사와 상담교사 간 역할 왜곡의 여지가 있음

6)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

2.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 실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과 같이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마약류 중독· <u>오남용</u>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 <u>오남용</u>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 <u>마약중독예방교육</u>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3(마약류 중독· <u>오남용</u> 등 예방교육) ① _____ _____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u>마약중독 예방교육</u>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u>오남용</u> 예방교육(이하 “ <u>마약중독예방교육</u> ”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마약중독예방교육</u> 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u>오남용,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u> --- <u>마약중독등예방교육</u> --- _____ -----.
1. 제9조의2에 따른 <u>보건교육</u>	② ----- <u>마약중독등예방교육</u> ----- ----- ----- ----- <u>오남용,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u> ----- <u>마약중독등예방교육</u> ----- ----- <u>마약중독등예방교육</u> ----- -----.
2. 3. (생략)	1. ----- <u>보건교육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u> ----- 2. 3. (현행과 같음)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마약중독등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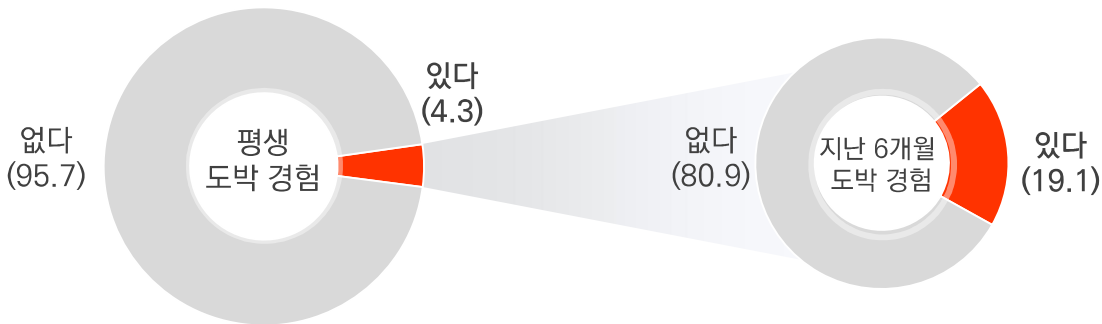
-----마약중독등예방교육
-----시기 · 대상 · 횟수 · 방법 · 점
검 및 평가-----.

2024년 청소년 13,36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은 565명(전체의 4.3%)으로 나타났고, 그중 19.1%는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청소년의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23.6%)와 정신건강 문제(22.4%)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도박 및 사행행위 이용 인원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청소년 도박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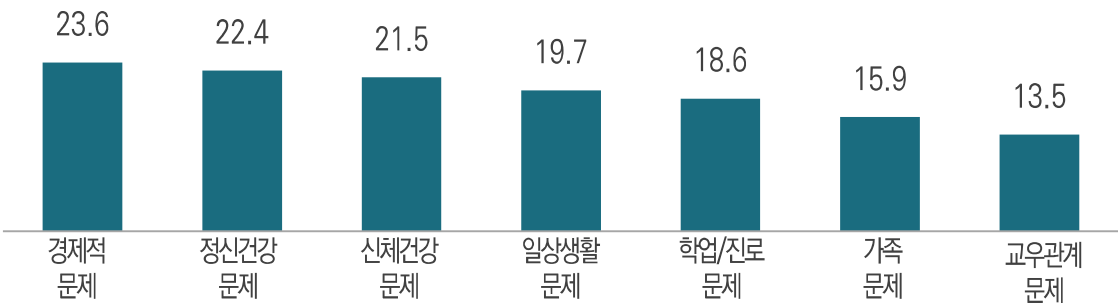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도박으로 인한 피해 >

(단위: %)



*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청소년 중 비율에 해당

자료: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⁷⁾을 통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 및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바 있음.

개정안은 해당 조문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동일하게 교육의 실시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예방교육의 효과성 평가 포함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등예방교육(마약중독예방교육+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점검·평가하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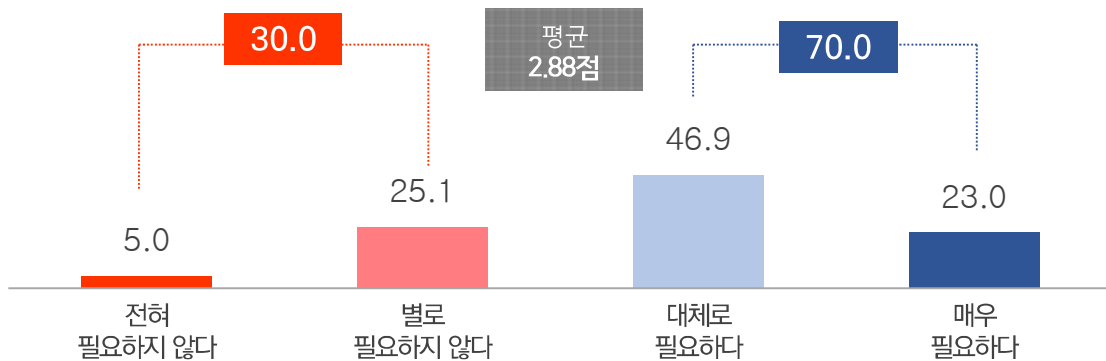
□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⁸⁾,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학교 도박 예방교육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한 점은 이러한 입법 방향을 뒷받침함.

7) 법률 제20789호, 2025.3.18. 일부개정

8) 경기 청소년 도박 3년새 10배… 초등학생까지 온라인 도박판, 조선일보, 2025.11.6.
도박 빚 갚으려… 청소년들 불법도박-사기-절도 악순환 늘, 동아일보, 2025.11.5.
"학교 인근까지 파고든 도박"…220억원 규모 도박장 일당 검거, 연합뉴스, 2025.10.27.

< 학교 도박예방교육 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

(단위: %)



* 「학교 도박예방교육 시간 확대」의 필요성 평균 점수는 4점 만점 기준 2.88점으로 나타남
자료: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무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예방교육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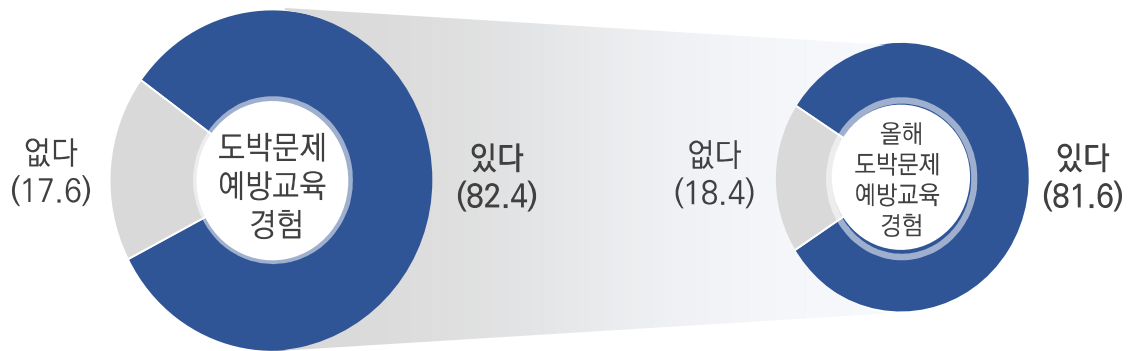
□ 첫째,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이 이미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동 법률은 보건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도박 중독의 예방’을 명시하고 있으며⁹⁾,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82.4%에 달하고 있음.

9)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률 >

(단위: %)



자료: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사무에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 둘째, 마약중독예방교육과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한데 묶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약류 중독과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은 모두 ‘중독’이라는 범주에 속하나, 전자가 물질 중독인 반면 후자는 행위 중독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대응법 또한 상이함에도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함께 묶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셋째,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마약류 실태조사는 본질적으로 마약류 중독의 실태를 다루고 있으며, 도박 중독과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11)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체계에 따라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78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에 학교의 장은 도박 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생략)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생략)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도박 중독예방교육을 포함한 마약류 중독·오남용 등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장과의 협의를 포함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수정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시 도박중독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한계가 예상되는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등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사항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치유연구원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므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관련 법령 근거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수정 - 청소년의 경우 마약 및 도박은 그 자체가 범죄이므로 ‘마약류 중독,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아닌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도박 예방교육’으로 수정 필요
○ 시·도교육청¹²⁾ 및 보건교사회: 신중검토 - 사행행위 및 도박은 「학교보건법」이 아닌 생활지도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더 적합함 -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을 단순히 보건교육에 통합해 다루는 것은 각 교육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교육 효과와 전문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검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184

12)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부산 등 9개 교육청

범교과 학습 개요

- (운영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10개)' 동일
- (운영방법) 범교과 학습 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 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
- (관련자료)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관련 자료 「에듀넷·티-클리어」에 탑재
※ (경로) [2015 개정] 교육정책→교육과정→교수·학습→범교과학습주제→인성교육 116번 게시물
[2022 개정]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 운영지원→2022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법령·교시·지침)	편성·운영 방법
①안전·건강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인터넷)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51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및 학교급별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참고 - 최근 학생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교육 필수 편성 (교육과정 내)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1/3 이상을 교육한 경우 1차시로 인정 ※ 초등학교 10분, 중고등학교 15분 이상 (교육과정 외) 수업 전·후,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총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1차시로 인정 ※ 단, 교육시간(단위: 차시)은 반드시 공문 및 계획 등 입력 근거에 의해서 실시된 것만 인정 가능
	소방 안전교육	연 1회	안전교육 통합 운영 및 교과교육 연계(소방훈련 별도)
	양성평등교육	15	- 안전·건강, 인성, 민주시민 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 - 법정의무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을 위한 시수 필수 편성 ※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별도 편성 권장
	보건교육	17	- 한 개 학년 이상 최소 17차시 이상 편성 - 교육부지침(연도별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을 계획·실시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연 2회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운영 - 안전·건강 교육과 통합 운영 가능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법령·교시·지침)	편성·운영 방법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사회정서교육)	6	•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교육과 연계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학교폭력 예방교육	11	• 교과·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 관련 주제와 통합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②인성	인성교육	의무	• 도덕, 실과, 기술·가정, 정보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 운영 권장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 1회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하거나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안전교육 등 관련 주제와 통합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디지털 시민교육	의무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실시
③진로	진로교육	의무	• 교과(중고는 '진로와 직업'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진로탐색활동),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진로교육 실시
④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권장	• 통합교과(바·술·즐), 국어,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운영 ※ 선거 교육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육자료(새내기유권자 연수 등) 적극 활용
⑤인권	장애인식 개선교육	2	• 인권교육, 교과교육과 연계하거나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이해수업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⑥다문화	다문화 이해교육	2	• 교과교육 연계 및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⑦통일	통일교육	의무	• 통일교육주간(5월 4주)과 연계 운영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 통일보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적극 활용 ※ 5시간 이상 운영 권장
⑧독도	독도교육	권장 (10시간 이상)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통합 • 독도교육주간과 연계하여 운영
⑨경제·금융	경제·금융교육	권장	• 사회, 실과, 기술·가정, 경제, 통합사회, 실용경제 등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과 연계·통합 운영
⑩환경·지속가능발전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의무	• 환경, 사회, 과학, 실과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과 연계 운영

※ 2025학년도에 변경(추가)된 사항은 청서 표기